
유학생 건강보험 질의응답자료

2021. 2. 5.

h·well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

목 차

(2021.2.5.)

< 자격 >

1.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이유	1
2. 건강보험 가입방법	1
3. 주소(체류지) 변경신고	1
4. 유학생 변경사항 신고	2
5.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기준	2
6. 세대합가 인정기준(가족 인정기준)	2
7. 외국인등록이 늦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1	3
8. 외국인등록이 늦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2	3
9. 입국일과 외국인등록일 사이 공백기간 건강보험 보장여부	3
10.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늦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4
11. 교환학생(D-2-6) 건강보험 가입일	4
12. 기타 체류자격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일	4
13. 체류자격 변경자 건강보험 가입일	4
14. 출입국이 빈번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5
15. 복학생 건강보험 가입일	5
16. 직역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5
17. 건강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일	6
18.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인정기준	6
19.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일	6
20. 건강보험증 가입자 성명 표기방법	6
21. 건강보험 가입제외	7
22. 건강보험 가입제외 인정기준(외국의 보험)	7
23.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출서류	8
24.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방법	8
25. 사전 가입제외 신청	8

< 보험료 부과납부 >

1. 신규가입자 보험료	9
2. 신규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9
3. 기존가입자 보험료	9
4. 기존가입자 선납보험료 분할납부 여부	10
5. 월중에 건강보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10
6. 출국 중 보험료 납부	10
7. 휴학기간 중 보험료 납부	11
8. 군복무 중 보험료 납부	11
9.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11
10. 세대합가하는 경우 보험료	11
11. 유학생 보험료 경감 대상	12
12. 유학생 보험료 경감 적용일	12
13.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보험료 경감	12
14. 보험료 경감 제외	13
15. 외국인 보험료 고지서	13
16. 보험료 고지방법	13
17.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13
18. 보험료 납부방법	14
19. 가상계좌 대리발급	14

< 보험료 체납 >

1.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15
2. 비자연장 제한 기준 체납금액	15
3. 비자연장 제한방법	15
4. 보험료 체납 시 소속 대학교 불이익	16
5. 보험료 체납금 분할납부	16
6. 보험료 체납금 완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 적용여부	16
7. 보험료 체납 중 출국하는 경우	16

< 보험혜택 >

1. 건강보험 혜택	17
2. 본인부담금	17
3. 건강검진	17
4. 월중에 건강보험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	18
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혜택	18
6. 민간보험과의 차이점	18

< 기타 >

1. 유학생 건강보험 관련 정보제공 여부	20
2. 외국어상담	20

< 자격 >

□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이유

Q1	유학생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3.1.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2019.7.16.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였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대학교 등의 요청으로 20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1.3.1.부터는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방법

Q2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 합니다.
설명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유학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신청 필요합니다. ③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주소(체류지) 변경신고

Q3	유학생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3	주소,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명	공단에서는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하여 가입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료연계가 누락되는 경우가 일부 있으니 외국인등록 변경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생 변경사항 신고

Q4	학생이 휴학, 제적, 졸업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4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설명	체류자격(유학(D-2), 일반연수(D-4))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 외의 유학생 변경사항(휴학, 제적 등)은 신고 불필요

□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기준

Q5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국내 체류지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설명	✓ (서류발급)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인증)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국적국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필요 ✓ (번역공증)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본 ✓ (유효기간) 국내서류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외국서류의 경우 발급일(확인일)로부터 9개월 인정

□ 세대합가 인정기준(가족 인정기준)

Q6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단위로 보험료를 납부(세대합가)할 수 있나요?
A6	남자친구와는 세대합가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만 세대합가 가능합니다.
설명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고 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가족(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이 늦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1

Q7	유학생(D-2)이 2021.3.1.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일이 2021.3.20.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은 언제인가요?
A7	외국인등록일인 2021.3.20. 가입됩니다.

□ 외국인등록이 늦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2

Q8	대학교 어학원에서 연수 중인 일반연수(D-4) 외국인이 2021.2.1.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일이 2021.3.20.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은?
A8	2021.8.1. 가입
설명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세부체류자격이 초중고생(D-4-3)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로 가입)

□ 입국일과 외국인등록일 사이 공백기간 건강보험 보장여부

Q9	입국일과 외국인등록일(건강보험 가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A9	건강보험 보장이 불가합니다.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등록이 지연되어 입국일과 외국인등록일 사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늦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Q10	외국인등록신고를 했으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A10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도 건강보험 가입일은 외국인등록일로 소급됩니다.
설명	외국인등록증 수령 이전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D-2-6) 건강보험 가입일

Q11	교환학생(D-2-6)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11	네,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유학(D-2)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일로 건강보험 가입됩니다.
설명	다만,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체류자격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일

Q12	종교(D-6) 체류자격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도 외국인등록일로 건강보험 가입되나요?
A12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가입됩니다.
설명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더라도, 체류자격이 유학(D-2), 초중고생(D-4-3)이 아닌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6개월 경과한 날을 계산하여 공단에서 가입처리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자 건강보험 가입일

Q13	체류자격이 구직(D-10)인 외국인이 2021.1.10 입국하였다가 2021.3.10. 일자로 유학(D-2)으로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은?
A13	유학(D-2) 체류자격 허가일인 2021.3.10.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 출입국이 빈번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Q14	어학연수생(D-4-1)이 한국에 4개월 체류하였다가, 1개월 이상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은 언제인가요?
A14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가입됩니다.
설명	외국인이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 유학(D-2), 초중고생(D-4-3) : 재입국일 ✓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 :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사례) 최초입국: 2021.3.1., 출국일: 2021.7.15., 재입국일: 2021.9.2. → 건강보험 가입일: 2022.3.2.

□ 복학생 건강보험 가입일

Q15	유학(D-2) 체류자격 휴학생이 5개월 정도 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복학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언제 가입되나요?
A15	재입국일로 건강보험에 다시 가입됩니다.
설명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유학(D-2) 체류자격은 재입국일로 건강보험에 다시 가입됩니다. ✓ 유학(D-2) 체류자격이 한국에 재입국할 때 외국인등록일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건강보험 가입됩니다. ✓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직역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Q16	유학(D-2) 외국인이 2019.1.5. 지역가입 → 2020.5.7. 직장가입자로 변경 → 2020.12.7.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은?
A16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일인 2021.3.1. 지역가입자 가입됩니다.
설명	다만,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인 2020.12.7. 일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일

Q17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어학연수생(D-4-1)이 3개월 정도 출국하였다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7	본인 신청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내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재가입 가능합니다.
설명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이력이 있고, ②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체류자격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③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으로 납부하면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D-4 체류자격은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재가입

□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인정기준

Q18	어학연수 중인 재외국민도 유학생으로 인정하여 입학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8	재외국민 어학연수생은 입학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명	재외국민·재외동포(F-4)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경우만 유학으로 인정합니다. ※ 대학부설 어학원 및 기타기관의 연수생은 인정 불가

□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일

Q19	재외동포(F-4)가 2021.2.1. 입국하였으나 2021.3.2.부터 시작하는 재학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은?
A19	2021.3.2. 가입
설명	재외국민·재외동포(F-4) 유학생은 입국 후 입학한 때부터 건강보험 가입합니다.

□ 건강보험증 가입자 성명 표기방법

Q20	건강보험증에 유학생의 성명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A20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한 영문성명으로 기재됩니다.
설명	✓영문성명 글자수가 긴 경우 건강보험증 상에는 일부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한국어 표기방식으로 성명변경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제외

Q21	건강보험 가입제외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1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급여혜택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유 없이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불가합니다.
설명	✓ (외국의 법령) -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프랑스) - 본국에서 자국민의 해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일본) - 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미국, UN) 등 ✓ (외국의 보험) - 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다가 국내 입국 후 계속해서 해당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 상품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불가능 ✓ (사용자와의 계약) - 외국 본사에서 우리나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단체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 외국 회사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 등

□ 건강보험 가입제외 인정기준(외국의 보험)

Q22	외국의 보험으로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2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설명	✓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가입한 외국의 보험으로만 가입제외가 가능합니다. ※ 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상품은 가입제외 불가합니다. ✓ 보장금액, 보장범위, 보장률, 수급빈도 등 보장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보장금액이 10억원 이상 등 상당히 큰 경우 가입제외 인정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출서류

Q23	일본 유학생이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3	가입제외신청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설명	✓ 외국의 법령으로 가입제외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 프랑스 : 가입제외신청서(국적 확인 후 가입제외) - 일본 : 본국(일본) 건강보험증, 가입제외신청서 - 미국 : 유니폼카드 또는 블루크로스블루실드 보험카드, 가입제외신청서 ✓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가입제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보험가입증서, 보험약관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및 번역공증은 불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방법

Q24	학교에서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24	본인 서명한 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설명	신청방법 : 팩스, 방문(지사·외국인민원센터)

□ 사전 가입제외 신청

Q25	일본 유학생이 당연적용 시행(2021.3.1.) 이전에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미리 건강보험 가입제외할 수 있나요?
A25	건강보험 가입 이전에 미리 가입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일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 보험료 부과·납부 >

□ 신규가입자 보험료

Q1	당연적용 시행일(2021.3.1.)에 취득되는 유학생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1	43,490원 (4월 선납보험료 39,540원 + 3월 정산보험료 분할분 3,950원) → 납부기한 2021.3.25.
설명	✓ 유학생은 '21.3월분 보험료부터 외국인 보험료의 30%를 부과(70% 경감확대)하여, 월 보험료는 <u>㉠39,540원</u> ✓ 시행일(2021.3.1.)에 취득되는 신규가입자는 3월 보험료와 4월 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납부마감일 2021.3.25.), 유학생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정산보험료를 10회 분할납부 → 1회 분할분 <u>㉢3,950원</u> ✓ 첫회 보험료는 43,490원(4월 선납보험료㉠ + 1회 분할분㉢)

□ 신규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Q2	2021.3.1.에 자격취득되는 유학생은 3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A2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납부 적용됩니다(자격취득일이 2021.3.1.인 유학생 한정).
설명	분할납부 횟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나, 민원이 3월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납 가능합니다.

□ 기존가입자 보험료

Q3	당연적용 시행 이전부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유학생도 70% 경감혜택을 받나요?
A3	기존 가입자도 '21.3월분 보험료부터 경감 적용되어, 외국인 보험료의 30%를 납부합니다.
설명	✓ 2월에 고지되는 3월 선납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적용된 금액(65,890원)으로 납부 ✓ 2021.3.5.에 4월 선납보험료 산정(30% 부과 적용) → <u>㉠39,540원</u> ✓ 3월분 30% 부과 적용하여 정산처리 → 차액 <u>㉢26,350원</u> ✓ 2021.3.25.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3,190원(㉠-㉢)

□ 기존가입자 선납보험료 분할납부 여부

Q4	당연적용 시행 이전부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유학생도 3월 선납보험료를 10회 분할하여 납부하나요?
A4	기존가입자의 3월 선납보험료는 분할납부하지 않습니다.
설명	취득일이 2021.3.1.인 유학생의 3월 정산보험료만 10회 분할합니다.

□ 월중에 건강보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Q5	2021.3.10. 건강보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몇월분부터 납부하나요?
A5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합니다.
설명	건강보험 가입일이 매달 1일인 경우 해당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외에는 그 다음달 보험료부터 부과됩니다. ※ 다만, 2021.4.1. 전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3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혜택은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중 보험료 납부

Q6	방학동안 본국(외국)에 오래 다녀오는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A6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1개월 미만 국외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	→ 위의 경우 1개월동안 국외체류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휴학기간 중 보험료 납부

Q7	휴학생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7	휴학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	다만, 휴학기간 중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 중 보험료 납부

Q8	재외국민인데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A8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설명	공단에서 부담하던 진료비용은 국방부에서 대납(공단-국방부 간 진료비 정산)하고 있으며,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Q9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지역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A9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서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지역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설명	✓ 2021.2.15. 일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2월까지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3월부터 직장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2021.2.1. 일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2월부터 직장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일자 기준)

□ 세대합가하는 경우 보험료

Q10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A10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여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설명	다만,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가 국내 소득·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해야 세대합가 가능

□ 유학생 보험료 경감 대상

Q11	재학 중인 학생이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동일하게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A1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외의 외국인은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유학(D-2), 일반연수(D-4) 외의 체류자격은 유학생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유학생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후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 보험료 경감 적용일

Q12	체류자격이 구직(D-10)에서 일반연수(D-4)로 변경된 경우 언제부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A1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허가일부터 보험료 경감 적용됩니다.
설명	체류자격 허가일이 1일이면 그 달 보험료부터, 허가일이 2일 이후이면 다음달 보험료부터 경감 적용됩니다.

□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보험료 경감

Q13	재외동포(F-4) 대학원생도 외국인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되나요?		
A13	재외국민·재외동포(F-4) 대학원생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 재외국민·재외동포(F-4)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유학생 경감이 적용됩니다.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제외		
	체류코드	가입일	보험료 적용('21.3월분부터)
	유학(D-2)	외국인등록일	30%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30%
	재외국민	교육부 인정학교*인 경우 입학일 (어학연수 불인정)	대학 이하인 경우 30% (대학원 불인정)
재외동포(F-4)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포함		

□ 보험료 경감 제외

Q14	유학생에게 연구용역비, 지원비 등으로 지급한 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14	네, 보험료 경감 제외됩니다.
설명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경감 취지는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보험료 경감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외국인 보험료 고지서

Q15	유학생 보험료 고지서는 한국어로만 발행되나요?
A15	한국어 및 영어로 발행됩니다.

□ 보험료 고지방법

Q16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험료 고지가 어떻게 되나요?
A16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한 체류지(주소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설명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Q17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이 유학생에게 안내되나요?
A17	홍보 리플릿 및 건강보험 가입안내문에 납부방법 안내합니다.
설명	납부방법: 가상계좌, 자동이체(계좌·카드),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공단지사, 은행

□ 보험료 납부방법

Q18	등록주소지에 살고있지 않아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데, 학교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안되나요?
A18	학교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없으며,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로 고지서를 간편하게 받아보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대리발급

Q19	유학생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대학교 담당자가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9	가상계좌는 본인 확인 후 납부의무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설명	대학교 담당자가 유학생을 대신하여 가상계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보험료 체납 >

□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Q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설명	✓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5%의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병원, 의원 등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 납부기한의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제한 ✓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인 경우 ✓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 징수합니다.

□ 비자연장 제한 기준 체납금액

Q2	보험료를 얼마나 체납하는 경우 법무부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2	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에 통보됩니다.
설명	✓ 법무부로 체납정보가 연계되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 등록외국인입니다. ✓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보험료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단-법무부 간 협의를 통해 기준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비자연장 제한방법

Q3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연장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A3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6개월 이하로 제한하여 체류허가 인정 (최대 3회까지만)
설명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당 외국인의 건강보험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 체납금을 완납하는 경우 정상적 체류허가 ✓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체류허가(6개월 이하, 최대 3회)

□ 보험료 체납 시 소속 대학교 불이익

Q4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소속 대학교에 불이익이 있나요?
A4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학교에 가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보험료 체납금 분할납부

Q5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5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체납월수만큼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설명	체납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대 24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체납금 완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 적용여부

Q6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추후 체납액을 완납하면 납부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6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마감일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체납 보험료 납부일부터 급여제한이 해제됩니다.

□ 보험료 체납 중 출국하는 경우

Q7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상황에서 출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7	출국 시 제재조치는 없으나,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제한, 법무부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설명	한국에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이 과거 기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보험혜택 >

□ 건강보험 혜택

Q1	건강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을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본인일부부담)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음 ✓ (건강검진혜택) 일반검진 및 암검진 혜택 제공 ✓ (이용의 편리성)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 ✓ (병원 접근용이) 국내 설립된 대부분의 의원, 병원, 약국 등 이용가능 ※ 다만,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음

□ 본인부담금

Q2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입원은 진료비*의 20%, 외래는 30~60%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불합니다.
설명	* 진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해당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 - (예시) 입원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 영양제를 투여받은 경우, 고급영양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 건강검진

Q3	유학생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 외국인민원센터에 건강검진 등록신청 후 검진 가능 ✓ 일반건강검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2년(비사무직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2021년도는 홀수 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 됩니다. ✓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1번 자궁경부암 검진 가능

□ 월중에 건강보험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

Q4	2021.3.10. 건강보험 가입하는 경우 3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이 되나요?
A4	건강보험 가입일(2021.3.10.)부터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설명	3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가입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일이 매달 1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부터 부과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혜택

Q5	유학생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나요?
A5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도 백신 접종대상입니다. (‘21.2.1. 기준)

□ 민간보험과의 차이점

Q6	민간보험보다 건강보험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6	보험금 청구절차가 없어 이용이 편리하고 보장범위가 넓은 점 등 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	유학생(민간)보험
보장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계약된 범위
보장횟수	- 제한 없음(질병 완치까지 보장)	- 입원: 발병일로부터 365일 - 외래: 연간 180회 - 처방조제비: 연간 180건
보장한도	- 제한 없음(질병 완치까지 보장)	- 입원: 연간 최대 1,000만원 - 외래: 1회당 최대 25만원 - 처방조제비: 1건당 최대 5만원
본인부담금	- 입원: 20% - 외래: 30~60%(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 본인부담 상한금·산정특례 적용 시 추가혜택	- 입원: 20% - 외래: 외래치료비 20%와 공제금액 중 큰 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조제비 20%와 8천원 중 큰 금액

구분	국민건강보험	유학생(민간)보험
청구방법	- 별도의 사후청구 절차 없음	- 별도 사후청구 필요 청구서 예시: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세 부내역서, 처방전, 수술확인서 등
사망보험금	- 없음	-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원)
비급여 의료비	- 없음	- 법정 비급여 질병·상해치료비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MRA
교통비	- 없음	- 가족 초청비용/ 사망시 유해 이송비
일상생활 배상책임	- 없음	-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	- 일반검진, 암검진 등 ※ 일반검진은 2년마다 실시(무료)	- 없음
본인부담금 상한제	- 전체 본인부담금 연간 일정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급 * 유학생은 152만원(보험료에 따라 차이)	- 입원료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초과 시 계약된 한도 내에서 보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 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비 율 경감(0~10%)	- 없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입원 시 전문간호인력 입원서비스 (간병부담 경감, 서비스 향상)	- 없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임신·출산 관련 급여혜택 외에 의료비 이용권(바우처카드) 추가제공	- 없음 ※ 민간보험은 임신·출산 보상 없음

※(민간)보험은 일반적인 사례이며, 보장내용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

☐ 유학생 건강보험 관련 정보제공 여부

Q1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고지내역,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대학교 담당자가 받아볼 수 있나요?
A1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외국어상담

Q2	외국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 033-811-2000으로 문의하시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이 가능합니다.